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83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정일영 · 조인철 · 유동수
강준현 · 최민희 · 안태준
서영석 · 황명선 · 윤후덕
권향엽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정당 정치에 대한 신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는 만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사실과 공천 당시 정당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관련 사항, 현재의 소속 정당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8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후보자가 직전 임기 중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후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탈당일
나. 탈당 당시의 소속 정당
다. 탈당 사유
7. 제6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직전 지방선거 당시 추천 정당 및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의 소속 정당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u><신 설></u> <u><신 설></u> ⑨ ~ ⑭ (생 략)	6. 후보자가 직전 임기 중 지역 구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 면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 선된 후 임기 개시일부터 90 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 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탈당일 나. 탈당 당시의 소속 정당 다. 탈당 사유 7. 제6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직전 지방선거 당시 추천 정 당 및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 재의 소속 정당 ⑨ ~ ⑭ (현행과 같음)
--	---